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부회장 선출규칙

1999. 8. 20. 제정
1999. 10. 12. 개정
2001. 2. 9. 개정
2002. 7. 3. 개정
2004. 6. 3. 개정
2007. 4. 13. 개정
2007. 5. 23. 개정
2010. 4. 9. 개정
2013. 4. 3. 개정
2014. 4. 26. 개정
2016. 5. 3. 개정
2019. 1. 3. 개정
2019. 1. 24. 개정
2019. 7. 29. 개정
2021. 3. 30. 개정
2022. 12. 17. 개정
2024. 2. 23. 개정
2024. 3. 29. 개정
2024. 9. 26.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시행세칙 제35조(선거관리)제2항 및 제40조(기탁금) 제3항, 제39조(후보자의 추천 및 확정) 제2항, 제44조(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처리) 제5항에 의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하 '한국교총 회장'이라 한다) 선거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제 2 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정관 및 동 시행세칙 및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 2 장 선거분과위원회

제 3 조(선거분과위원회 구성) ① 한국교총 선거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관시행세칙 제36조(선거분과위원회 구성)에 의거, 시·도별로 1명씩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시·도별 한국교총 선거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위원회 사무소는 한국교총 사무국내에 둔다.

제 3 조 2(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정관시행세칙 제36조(선거분과위원회 구성)에 의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소위원회는 원활하고 신속한 선거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총 5명을 위원회 위원중 선출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출규칙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시행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토록 한다.
- ③ 소위원회에서는 후보자 공약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여 전체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제 4 조(선거분과위원등의 중립의무) 선거분과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거분과위원과 한국교총, 시·도교총, 시·군·구교총 사무국 직원(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포함)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의 2(선거분과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 ① 위원장을 포함한 선거분과위원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관시행세칙 제29조 제1항의 대의원 추천을 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9. 27>

- ② 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선거인이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교총 홈페이지 또는 한국교육신문·한교닷컴 등에 게재하고, 전 회원에게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6>
- ③ 선거분과위원회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4 조의 3(선거사무종사자의 공정한 선거관리) ① 제5조의 선거사무를 대행하는 사무국 직원(이하 “선거사무종사자”)은 제4조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별표 5의 “선거사무종사자 업무 수칙”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선거사무종사자의 업무 수칙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위반의 경중을 판단해 경미한 업무 수칙 위반에는 서면경고 조치하고, 중대한 업무 수칙 위반에는 즉시 한국교총 회장에게 당사자 교체와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 ③ 선거사무종사자는 정관시행세칙 제43조 제5호와 관련하여, 후보자 및 지지자가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강요 등으로 선거공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후보자 및 지지자의 정관시행세칙 제43조 제5호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고의성, 반복성 등 위반의 경중을 판단해 제21조에 따라 처분한다.
<조항신설 2024. 9. 26>

제 5 조(선거사무의 대행) 위원회는 한국교총 사무국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회장선거 준비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선거운동 위반행위 접수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 선거인 명부 작성·열람·확인·보고·정정 등에 관한 사무
4. 투표안내문 및 투표용지 등의 작성, 발송 및 회수, 개표 준비

5. 기타 선거 준비에 관한 사항

- 제 6 조(위원장의 직인)** ① 위원회가 행하는 선거 관련 제반 사무서류 및 공고문, 통지문에는 위원장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 직인의 문안은 “한국교총 선거분과위원장”으로 하고, 재질은 뿔 인장으로 하며, 규격은 2.5cm×2.5cm로 하며 별지 제1호 (가)의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신고한다.
- ③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장 직인을 투표용지 5천매에 각 1개의 비율을 한도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인으로 등록된 것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별지 제1호 (나)의 서식에 의하여 직인에 부착시킨다.
- ⑤ 위원회는 직인 사용 대장을 별지 제1호 (다)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선거인 명부

- 제 7 조(명부작성)** ① 선거인은 선거인 수 확정 이전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 다만, 선거인 수 확정 이전에 회원이었으나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회원은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하 ‘시·도교총 회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거쳐 선거인명부에 추가 등재한다.
- ② 각 시·도교총 회장, 시·군·구교원총연합 회장(이하 ‘시·군·구교총 회장’이라 한다), 분회장 및 모든 회원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인의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e-mail), 자격에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인 명부 작성만료일 현재 선거인의 변동(사망, 자격상실, 탈퇴, 기타 사유로 인한 교체)으로 선거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선거인수만을 일단 확정하고, 선거 7일(우편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 등의 발송일 10일, 온라인투표의 경우 3일)전에 최종 확정하여야 하고, 공고에 관한 사항은 선거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4. 9. 26>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선거인 명단에 의거, 별지 제2호 (가)서식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 제 8 조(명부의 열람)** ① 위원회는 제7조에 의거 작성된 선거인 명부를 한국교총에 파일로 보관하고 한국교총 선거홈페이지 탑재하여 선거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선거인 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를 한국교육신문과 한국교총 홈페이지(<http://www.kfta.or.kr>)에 공고한다.

- 제 9 조(명부의 정정 등)** ① 선거인의 신분변동, 또는 명부의 오기·누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도교총회장이 선거인 명단 변경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선거일 7일(우편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 등의 발송일 10일, 온라인투표의 경우 3일)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 ② 위원회가 이 규칙에 의하여 명부를 수정·정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교란에 기재하고 위원장이 날인한다.

- 제 10 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 ① 선거인명부 사본을 작성할 경우 원본과 틀림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원장 직인을 날인한다.
- ② 후보자에게는 선거인 명부를 교부하지 않으며, 대의원 추천을 받기 위한 대의원 명부는 후

보자별로 1부씩 교부한다.

③ 후보자 및 후보자가 지명한 대리인이 선거인 명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열람하게 한다.

제 4 장 후보자

제 11 조(대의원의 후보자 추천) ① 정관시행세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추천은 회장에 입후보하는 자가 부회장 입후보자 5명을 연명하여 온라인 대의원 추천 시스템으로 받는다.

② 대의원 추천을 받고자 하는 회장 입후보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온라인 대의원 추천 시스템 개설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개설 순서는 요청서 접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③ 후보자 추천 후에 대의원의 자격이 소멸되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추천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대의원의 후보자에 대한 복수 추천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24. 9. 26>

⑤ 대의원은 온라인 대의원 추천 시스템을 통해 후보자 추천을 완료하면 추천을 철회할 수 없다. <신설 2024. 9. 26>

⑥ 온라인 대의원 추천 시스템을 통해 대의원 추천을 받는 도중 부회장 입후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9. 26>

제 11 조의 2(추천등 관련 서류 교부) 위원회는 제5조 제5호에 의거 선거사무를 대행하는 사무국에 후보자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후보자 등록 기간의 최소 1주일 전에 후보자에게 교부하는 기간을 두게 하고, 후보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에게 교부토록 한다. <개정 2024. 9. 26>

제 12 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의 등록은 정관시행세칙 제29조 제2항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여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위원회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관시행세칙 제29조(회장 선출)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직을 그만두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직원 사본, 사직원 접수증,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후보수락서, 이력서, 추천 대의원 명단, 서약서, 범죄 경력 및 징계 이력 확인서, 후보자 등록 위임장, 교원확인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 9. 26>

④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완료된 직후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등록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서류를 선거·교총 홈페이지 또는 한국교육신문·한교닷컴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⑥ 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 범죄 경력이나 징계 이력 등 공표된 사실이 허위일 경우 선거인이 라면 누구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에게 구체적인 증명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위원회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선거·교총 홈페이지 또는 한국교육신문·한교닷컴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6>

⑦ 후보자등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 13 조(후보자 등의 인영 신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후보자 인장의 인영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후보자는 선거관련 제반 서류에 반드시 위원회에 신고한 인영의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14 조(후보자 사퇴신고) 등록을 마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후보자 사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15 조(후보자 사퇴 등에 관한 공고) ①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사퇴·사망·등록 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선거·교총 홈페이지 또는 한국교육신문·한국교육신문·한국교육신문 등에 공고하고, 투표용지 인쇄 이전일 경우에는 당해 후보자란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인쇄한다. <개정 2024. 9. 26>

② 후보자가 사퇴하였을 경우에는 사퇴사유를 명기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5 장 기탁금

제 16 조(기탁금)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시에 삼천만원(₩30,000,000)의 기탁금을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기탁금의 납부) ① 기탁금은 한국교총이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탁금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4. 9. 26>

제 18 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위원회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때 또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때는 기탁금의 반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거, 기탁금을 반환할 때에는 제17조(기탁금의 납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영수증을 지참한 자에게 그 영수증과 교환하여 반환하되, 영수증을 분실한 때에는 기탁자(기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직접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탁자가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온 때에는 당해 예금계좌에 기탁금 반환액을 무통장 입금한 후 즉시 사본을 당해 기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외에 기탁금은 후보자가 등록 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100분의 10 미만인 때에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한국교총에 귀속된다.

제 6 장 선거운동

제 19 조(선거운동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26>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추천서를 받기 위해 대의원을 접촉하는 행위
3.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명한 1명)인 경우는 허용한다.

1. 본회 회원이 아닌 사람
2. 투표권이 없는 회원 <신설 2024. 9. 26>

제 20 조(선거운동 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고, 이 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9. 26>

제 21 조(선거운동의 허용 범위 및 금지.제한 등) ① 후보자 및 지지자는 정관시행세칙 제43조(선거운동의 금지) 제1호 내지 제5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정관시행세칙 제43조(선거운동의 금지) 제6호와 관련해 위원회는 별표 1와 같이 선거운동 허용 범위 및 금지.제한 사항을 정한다. 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금지 사항을 준용하되, 적용 범위와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회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한다.

② 정관시행세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원회는 선거운동 위반의 고의성, 반복성 등 경중을 판단해 제44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공개경고 이상의 처분을 한다. 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1회에 한 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공개경고는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4. 9. 26>

③ 정관시행세칙 제44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공개경고는 선거·교총 홈페이지 또는 한국교육신문·한교닷컴 등에 공지하되, 중대한 선거운동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로 전 회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공지할 수 있다. 단, 그 시기 및 범위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24. 9. 26>

④ 정관시행세칙 제44조 제2항 제2호의 공개경고 2회 누적시에는 제3호의 선거운동 제한 처분을 하고 3회 누적시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등록무효, 당선무효 처분을 한다.

⑤ 정관시행세칙 제44조 제2항 제3호의 선거운동 제한은 별표 2과 같이 하되, 적용 방식·시기 등 세부사항은 선거분과위원회가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경중을 판단해 회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한다.

⑥ 정관시행세칙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공개 경고 2회 누적시에는 제3호의 투표권 제한 처분을 한다.

⑦ 현직회장이 한국교총 회장으로 재임후보할 때에는 선거공고일 이후부터 후보자 등록시까지 별표 3의 사항을 제한토록 한다.

⑧ 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신원불명인이 정관시행세칙 제43조에 정한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선거사무를 방해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6>

제 21 조의 2(선거운동 위반의 신고) ① 선거인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 위반 행위 신고는 선거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접수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에 대한 처분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조항신설 2024. 9. 26>

제 22 조(후보 연락처) 후보자는 주소, 전화번호, e-mail을 포함한 연락처를 위원회에 신고하여

야 하고,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 23 조(후보자 공보 등) 정관시행세칙 제29조(회장선출) 및 제42조(후보자 공보)에 따른 후보자 공보, 기타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홍보는 별표 4와 같이 시행하되, 시행시기와 횟수, 범위,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세부 운용 사항은 선거분과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 24 조(후보자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① 정관시행세칙 제42조(후보자 공보) 제5항의 후보자 연설회 및 토론회는 본회 지역조직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개최 여부, 방법 및 일정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후보자 연설회 및 토론회는 후보자간 자질 및 전문성, 정책 및 공약을 비교·검증하는 등 회원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신설 2024. 9. 26>

③ 후보자 연설회 및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불참사실을 선거교총 홈페이지 또는 한국교육신문·한교닷컴 등에 게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관시행세칙 제43조 제4호 위반행위로 처분한다. <신설 2024. 9. 26>

제 25 조(연설회장의 질서유지 등) ① 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기타인이 장내 질서문란행위, 상대방 비방행위, 기부행위 등 정관 및 이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즉시 이를 제지 또는 경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설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적정수의 질서유지인을 두며, 질서유지인은 위원회에서 정한 표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 7 장 선거 방법

제 26 조(투·기표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하며, 1인 1표로 한다.

② 투표방법은 집합투표, 우편투표, 온라인투표 또는 기타의 방법 등을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선거인의 대리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선거인은 투표를 할 때 투표지에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표방식·용구를 사용하여 한다.

제 27 조(기호추첨) ① 선거 사무를 위한 후보자의 기호추첨은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하여 결정하되, 후보자가 대리인에게 기호 추첨을 위임할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시 별지 제10호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4. 9. 26>

② 기호추첨을 위한 추첨순위는 후보자 등록 신청 순으로 하며 추첨방법은 제비뽑기식으로 한다. 다만, 추첨개시 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③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 28 조(투·개표 사무원) ① 위원회는 투·개표 사무를 위하여 한국교총 및 시·도교총사무국 직원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자 중에서 투·개표 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투·개표 사무 보조를 위하여 투·개표 사무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투·개표 사무에 대한 책임자로 제1항의 투·개표 사무원 중에서 투·개표 사무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투·개표 사무장은 투·개표의 원활한 진행을 관리한다.

제 29 조(투·개표소의 출입제한) ① 선거인, 위원회의 위원, 투·개표 참관인 또는 투·개표 사무원 및 투·개표 사무 보조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단, 온라인 투표의 경우에는 개표소에 출입 제한 없이 모두 출입이 가능하다.

② 선거인, 위원회의 위원, 투·개표 참관인 또는 투·개표 사무원 및 투·개표 사무보조원이 투·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표지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 표지 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착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다.

제 30 조(투·개표소의 질서유지) ① 위원장은 선거장내 투·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개표 사무원, 투·개표 사무보조원으로 하여금 선거장내 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투·개표소 내 또는 투·개표소 부근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위원 또는 투·개표 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개표소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집합투표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하여야 한다.

제 31 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며, 투표율은 개표시 전체 투표율만 집계한다. <개정 2024. 9. 26>

②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 32 조(집합·우편투표 유효·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문자 또는 그림을 기입한 것
6. 위원회에서 정한 기표방법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 란 외에 기표를 추가한 것
7. 집합투표의 경우 위원회에서 정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8. 우편투표의 경우 투표용지 기표란에 도장, 서명, 이름 등 개인식별 표시한 경우
9. 이외의 무효투표 여부는 위원회가 판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집합투표의 경우 위원회의 기표용구에 의한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는 등 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 후 접은 것이 묻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오염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 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절취하지 않은 경우
8. 우편투표의 경우 개인식별이 아닌 단순 분류를 위해 기재된 글자의 경우
9. 우편투표의 경우 회송용 겹봉투가 교총에서 보내준 회송용 겹봉투가 아닌 경우
10. 우편투표의 경우 회송용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인원 수 보다 속봉투 수량이 적은 경우
11. 이외의 유효투표 여부는 위원회가 판정한다.

제 8 장 투 표

제 1 절 집합투표

제 33 조(투표의 제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선거일에 본인임을 증명(신분증, 온라인 본인 인증, 선거인 명부 서명 등)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다.

제 34 조(투표 참관인) ① 위원회는 투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선정하는 투표 참관인의 수는 후보자 수를 감안하여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7일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투표 참관인에게 위원회가 정하는 표지를 투표 개시 시각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④ 투표 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는 투표 참관인이 투표에 관한 위법 상황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위원회에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⑥ 투표 참관인은 반드시 회원이거나 교원이었던 자로 하여야 한다.

제 35 조(투표안내문 작성·발송 등) ① 위원회는 분회별로 투표 안내를 위한 투표 안내문을 선거일 7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단, 분회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대학 등에 소속된 선거인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발송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회 주소·성명 오기 등 착오로 인하여 투표안내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수정하고 해당 분회의 분회장에게 유선 통보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개인별 발송된 투표안내문이 주소·성명 오기 등 착오로 인하여 반송되어 온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수정하고 해당 선거인에게 유선 통보할 수 있다.

③ 투표안내문 작성·송부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에 위임한다.

제 36 조(투표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회장 선거장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표소에는 기표소 및 투표함,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37 조(투표용지 제작) ① 위원회는 선거일전 3일까지 별지 제12호 (나) 서식에 의하여 투표용지를 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는 선거인정수에 위원회가 정하는 파손되는 투표용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를 가산하여 제작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위원장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38 조(투표용지의 봉인·보관 등) 투표사무원은 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 받았을 때 용지의 매수, 위원장 직인의 인쇄, 일련번호, 인쇄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다시 봉쇄·봉인해두고 위원장의 투표개시 선언 때 개봉한다.

제 39 조(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별지 제2호 (나) 서식의 투표인 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아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 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③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④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 40 조(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투표사무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소별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출석한 투표 사무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투입구를 별지 제12호 (다) 서식을 부착하여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봉쇄·봉인을 거부하는 투표 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 41 조(투표록의 작성 등) 투표사무장 및 참관인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투표록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2 조(투표함 등의 송부) 투표소별 투표 사무원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소별 투표참관인의 호송 하에 투표함과 투표록, 선거인명부, 잔여투표용지를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2 절 우편투표

제 43 조(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제작·봉인·보관 등) ① 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전 선거인수가 확정되면 별지 12호 (나) 서식의 투표용지 및 별지 제14호, 제15호 서식에 의한 회송용 겹봉투, 속봉투를 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 회송용 겹봉투, 속봉투는 선거인정수에 위원회가 정하는 파손되는 투표용지, 회송용 겹봉투, 속봉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를 가산하여 제작한다.

② 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매수, 일련번호, 인쇄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그 투표용지를 박스 등 용기에 넣어 봉합한 후 위원회가 지정한 밀폐된 장소에 두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봉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봉쇄·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투표용지에는 위원장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쇄 날인으로

같음할 수 있다.

제 44 조(투표용지 등의 발송) ① 위원회는 선거인이 재직하고 있는 분회별로 선거인당 투표용지 각1매, 속봉투 각1매, 후보 공보물 각 1매와 별지 제2호 (나) 서식에 의한 회송용 투표인 명부 1부, 투표안내문 1부, 회송용 겹봉투 1부를 선거일 2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단, 분회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대학 등에 소속된 선거인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발송할 수 있다.

② 투표용지의 발송 및 회송은 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한다.

③ 위원회는 분회 주소, 분회장 성명 오기 등 착오로 인하여 투표용지 및 안내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수정하고, 해당 분회에 이를 다시 발송하되, 다시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단, 반송.재발송여부.재발송불가 사유 등은 별지 제 16호 (가) 서식의 투표용지 반송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위원회는 개인별 발송된 투표용지 및 안내문이 주소·성명 오기 등 착오로 인하여 반송되어 온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수정하고 해당 선거인에게 이를 다시 발송하되, 다시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단, 반송.재발송여부.재발송불가 사유 등은 별지 제 16호 (나) 서식의 투표용지 반송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제 45 조(투표용지 등의 발송 및 접수를 위한 사무소 설치) ① 위원회는 투표용지 등을 발송 및 접수할 수 있게 한국교총 사무국내에 사무소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에는 투표용지 등의 발송 및 접수 사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제 46 조(투표용지 등의 발송 및 접수 사무원) 위원회는 투표용지 등의 발송 및 접수 사무를 위하여 사무원 중에서 책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발송 및 접수 현황에 대해 별지 17호 (가) 내지 (나)의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된 회송용 봉투는 위원회가 정한 박스 등에 넣는다. 사서함을 개설한 경우 우체국에서 보관토록 한다.

단, 등기우편 또는 택배 이외의 방법으로 접수되는 경우에 한해서 책임자는 위원회에 별지 17호 (다)의 서식에 의하여 투표용지 접수 상황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7 조(투표용지 등의 수령, 기표방법, 회송 등) ① 분회장 또는 선거인은 등기 또는 택배로 제4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물을 받아서 확인해야 한다.

②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기표 하여야 한다. 단,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성명, 싸인, 도장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④ 선거인은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속봉투에 넣어 봉합하여 속봉투를 회송용 겹봉투에 넣되, 반드시 별지 제2호 (나) 서식에 의한 회송용 투표인 명부의 본인 서명 확인란에 서명한다. 분회장은 소속 분회 선거인의 선거가 모두 종료되면 속봉투와 회송용 투표인 명부를 회송용 겹봉투에 넣어 봉합하고, 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인별 발송된 경우에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속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회송용 투표인 명부의 본인 확인란에 서명하고, 회송용 투표인 명부와 속봉투를 함께 회송용 겹봉투에 넣어 봉합하여 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여야 한다.

- ⑤ 회송된 봉투는 선거분과위원회가 정한 일시 도착분까지만 유효로 한다.
- ⑥ 접수마감 이후에 사무소에 접수된 회송용 봉투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별도로 접수하고 별도 보관함에 넣어 보관한다.

제 48 조(회송된 우편투표겉봉투의 봉인) 위원회는 투표용지 등의 발송과 동시에 박스 등 선거분과위원회가 정한 우편투표 보관용기를 선거인 수를 감안하여 제45조에 규정한 사무소안에 비치하되, 보관용기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참관인과 같이 검사한 후 이 사무소에 대해 출석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자물쇠의 봉쇄·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 3 절 온라인투표

제 49 조(온라인투표 시스템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온라인투표를 위한 시스템 및 선거홈페이지(vote.kfta.or.kr)를 설치·개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해 시스템의 개발, 보안유지, 개표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업체가 대행하게 하고, 한국교총 사무국이 선거 홈페이지를 운영토록 한다.
 ③ 위원회는 시스템의 안정과 보안등을 위해 시스템 대행업체의 전문인력을 선거사무소에 파견 요청할 수 있다.

제 50 조(투표절차 등) ① 온라인투표는 선거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E-mail)로 투표권한을 부여하되, 선거인이 투표시스템 제공업체가 정하는 방식의 개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투표하도록 한다.
 ② 선거인이 휴대폰 또는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한국교총 사무국은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기간에 해당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메일 생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최대한 안내토록 한다.

제 51 조(투표권한 부여) 제50조 제1항의 투표권한 부여시에는 선거인 개개인마다 고유한 방식의 접근 방법을 부여하도록 투표시스템 제공업체의 기술지원을 받도록 한다.

제 52 조(선거절차 안내) ① 위원회는 회원에게 선거절차를 안내해야 하며, 이는 선거·교총 홈페이지, 한국교육신문·한국닷컴,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 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내한다. <개정 2024. 9. 26>
 ② 사무소에는 선거절차 안내 등 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제 9 장 개 표

제 1 절 집합투표

제 53 조(개표소의 설치) 위원회는 개표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제 54 조(개표관리) 개표사무는 위원장의 개표 선언 후 시작한다.

제 55 조(투표함의 개함) ① 개표사무원은 위원장의 개표 선언 후, 출석한 위원, 참관인이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투표함을 개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대조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가)의 서식에 따라 투표록에 그 이상 유무를 기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56 조(개표의 진행 등) ① 개표는 별지 제12호 (가) 서식의 수량을 위원장과 후보자 또는 후보자대리인이 확인 후 비밀투표가 보장되기 위해 개표대에 모두 섞어 동시에 행한다.

② 개표에 있어서 판독이나 투표지 계산, 검산 시에 전산 또는 계수기를 이용할 수 있다.

③ 개표과정 중 당락을 좌우할 정도가 아닌 수의 오류나 오산 등을 이유로 개표 전체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최종 집계후 위원장이 하되, 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제 57 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각각 포장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 58 조(개표록·집계록의 작성) 위원회는 개표록 작성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별지 제19호 서식 (가) 내지 (나)에 의한 개표록 및 집계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59 조(개표 참관인) ① 위원회는 개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 참관인의 수는 후보자 수를 감안하여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후보자별 개표 참관인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7일전까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개표 참관인에게 위원회가 정하는 표지를 개표 개시 시각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개표 참관인은 개표에 간섭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는 개표 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 상황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위원회에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⑥ 개표 참관인은 반드시 회원이거나 교원이었던 자로 하여야 한다.

제 2 절 우편투표

제 60 조(투표함의 개함) ① 개표사무원과 개표사무보조원은 위원장의 개표 선언 후, 출석한 위원, 참관인이 투표보관용기의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개봉한다.

② 개표할 수 있는 회송용 겹봉투의 판정은 위원회가 한다.

제 61 조(개표가능 회송용 겹봉투와 속봉투의 개봉) ① 개표사무원과 개표사무보조원은 회송용 겹봉투를 개봉하여 속봉투와 회송용 선거인 명부를 꺼내 대조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1호 (가) 서식의 개표록(가)와 개표록(가의 2)에 기록하고 봉합되어 있는 속봉투는 다시 개표함에 넣는다. 이 경우 회송용 겹봉투에 속봉투와 회송용 선거인 명부가 들어 있지 아니하거나 속 봉투가 봉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선거인 명부상의 투표 확인자 수보다 속봉투 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고 따로 분류·보관한다.

② 개표사무원과 개표사무보조원은 속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용지를 꺼내고 그 결과를 별지 제 21호 (나) 서식의 개표록(나)와 개표록(나의 2)에 기록하고 투표용지를 다시 개표함에 넣는다. 이 경우 속봉투에 투표용지가 들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고 따로 분류·보관한다.

제 62 조(개표록·집계록의 작성) 위원회는 개표록 작성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별지 제21호 (다) 서식에 의한 개표록(다)와 별지 제19호 (나) 서식에 의한 후보집계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63 조(집합투표 준용) 투표지의 구분, 개표록 및 집계록 작성 등 기타 우편투표 개표에 필요한 사항은 제9장(개표) 제1절 집합투표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 3 절 온라인투표

제 64 조(개표결과 발표) 개표는 투표종료 이후 투표시스템에서 하고, 공식 결과는 위원장이 발표한다. <개정 2024. 9. 26>

제 65 조(개표록, 집계록 작성) 위원회는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등 투표결과를 서면으로 작성·보전하여야 한다.

제 66 조(무효투표 등) 위원회는 타인의 투표번호를 도용하여 투표한 행위 등 위법한 투표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해당 투표를 무효처리하고, 투표시스템의 고장 및 해킹 등으로 인터넷 전자투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선거 자체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제 10 장 당 선 인

제 67 조(당선증 교부)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 11 장 보 칙

제 68 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교총 사무국에 위임할 수 있다.

제 69 조(공고) 선거와 관련한 공고는 한국교육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교총 홈페이지(<http://www.kfta.or.kr>)에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2001. 2. 9)

-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선거분과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2002. 7. 3)

-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선거분과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2004. 6. 3)

-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선거분과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2007. 5. 23)

-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선거분과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2010. 4. 9)

-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선거분과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2013. 4. 3)

-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선거분과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2014. 4. 26)

-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선거분과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2016. 5. 3)

-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선거분과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2019. 1. 3)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선거분과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2019. 1. 24)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선거분과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2019. 7. 29)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선거분과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2021. 3. 30)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선거분과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2022. 12. 17)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선거분과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2024. 2. 23)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선거분과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2024. 3. 29)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선거분과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2024. 9. 26)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선거분과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별 지 서 식

<별지 제1호 (가) 서식> (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선거분과위원장 직인 신고서

선거분과위원장	직인 인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 00 대 회장선거 관리업무에 사용할 직인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선거분과위원회 위원장 (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 00 회 00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

<별지 제1호 (나) 서식> (규칙 제6조 제4항 관련)

선거분과위원장 직인 표지

한국교총 선거분과위원회 위원장 직인

<별지 제1호 (다) 서식> (규칙 제6조 제5항 관련)

선거분과위원장 직인 사용 대장

연번	사용 내역	년 월 일	위원회 확인

한 국 교 원 단 체 총 연 합 회
제 회 OO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가) 서식> (규칙 제7조 제4항, 제39조 제1항 관련)

제37대 한국교총 회장선거 선거인 명부

- 제37대 한국교총 회장선거 선거인 명부입니다. 우편투표로 진행되는 한국교총 회장선거 참여를 위해 개별 회원님 본인의 정보(성명, 출생연도, 직위 등)를 확인·수정 후 개별서명을 부탁드립니다.
- 비고란에는 기재되어 있는 회원 중 '휴직', '휴가', '파견' 등으로 현재 소속 학교(분회)에 근무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가입 회원, 누락회원 등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공란이나 여백에 '성명, 출생연도, 직위' 기입 후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회장님! 선거인명부를 팩스로 전송한 후에는 회원님의 소중한 정보가 유실되지 않도록 꼭 폐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OO시도] [OO학교(분회)]

아래와 같이 우리 분회 선거인 명부를 확인합니다.

[분회장 성명 :

(서명)]

순번	성명	출생연도	직위	서명	비고 : 학교분회 부재 회원	
					사유(휴직, 휴가, 파견 등)	기간
1	홍길동	60년	교장			
2	김영희	68년	교감			
3	김철수	72년	교사			
4	·	75년	교사			
5		80년	교사			
6		83년	교사			
7		86년	교사			
8		90년	교사			
9		92년	교사			
10		93년	교사			

※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으며, 제37대 한국교총 회장선거를 위한 회원님의 투표참여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

※ 선거인 명부 반송안내 : ① 분회장 수령 → ② 회원 회람 및 정보 수정·서명 → ③ 한국교총 선거사무소로 팩스(서울·인천·경기·강원 : 070-4275-0542 / 그 외 지역 : 070-4275-0543) 전송

제OO대 한국교총 회장선거 선거분과위원장

제00대 회장선거 회송용 투표인 명부

00000 - 1/1

- 제00대 한국교총 회장선거 회송용 투표인 명부입니다. 우편투표로 진행되는 한국교총 회장선거 참여를 위해 투표를 한 선거인은 서명 확인란에 반드시 서명하셔야 합니다.
- 분회장님(교총업무담당자님)은 기표된 투표지를 넣은 속봉투가 봉합되었는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합이 안된 것은 무효 처리 됨)

[○○] [○○○○학교]

순번	성명	출생연도	직위	서명	비고
1	김교총	00년	교장		
2	박한국	00년	교감		
3	이대한	00년	교사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으며, 회원님의 투표참여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
- ※ 비고란에 ‘파견(파견지 불명)’, ‘휴직(발송처 불명)’, ‘병가(발송처 불명)’로 표기된 회원님의 경우, 본회 정회원(회비 납부자)으로서 투표권이 있어 다방면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부재중인 회원입니다. 학교에서 투표 가능한 경우 투표권 행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어려울 경우 폐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00대 한국교총 회장선거 선거분과위원장

<별지 제3호 서식> (규칙 제8조 제2항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 대 회장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공고

아래와 같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 대 회장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를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고, 선거인께서는 변경사유가 있을 시 해당 시.도교총 또는 시.군.구교총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년 월 일 - 월 일
2. 열람장소 : 한국교총, 한국교총 회장선거 홈페이지
3. 문의처 : 각 시.도교총, 시.군.구교총

한국교총 조직강화국(전화번호, 팩스번호)

 년 월 일

한 국 교 원 단 체 총 연 합 회
제 회 OO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장

<별지 제4호 서식> (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선거인명단 변경 신고서

내용 변경전후	소속·직위	성 명	휴대폰	E-Mail	변경사유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위와 같은 사유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 대 회장 선거인명단을 변경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인)

한 국 교 원 단 체 총 연 합 회
제 회 OO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규칙 제11조 제2항 관련)

온라인 대의원 추천 시스템 개설 요청서

1. 후보자

가. 소속·직위 :

나. 성명 :

본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 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온라인 대의원 추천 시스템 개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후보예정자)

(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 회 OO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 (가) 서식> (규칙 제12조 제3항 관련)

후 보 수 락 서

본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 대 회장 및 부회장 후보를
수락합니다.

년 월 일

회 장 후보 소속 및 직위 :	성명 :	(인)
부회장 후보 소속 및 직위 :	성명 :	(인)
소속 및 직위 :	성명 :	(인)
소속 및 직위 :	성명 :	(인)
소속 및 직위 :	성명 :	(인)
소속 및 직위 :	성명 :	(인)

한 국 교 원 단 체 총 연 합 회

제 회 00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 (나) 서식> (규칙 제12조 제3항 관련)

이 력 서

성 명	(한글)	(한자)	성별		사 진
주민번호	-		연령		
현주소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근무처)		(핸드폰)		
이메일	@				
교총가입일자	년 월 일 (총 년)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소재지
	~	초등학교 졸업			
	~	중 학 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대 학 교 졸업			
	~	대학교 대학원			
	~				

	기 간	근무 및 활동내용	직 위
교 육 경 력	~		
	~		
	~		
	~		
	~		
	~		
	~		
	~		
기 타 특 기 사 항			
주 요 약 력	1. 2. 3. 4. 5. ※용도 : 보도자료 등 대외홍보용 (개당 공백포함 30byte 미만)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 일반 개인정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선거분과위원회는 ‘회장선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이용 목적> 회장선거 입후보자 등록

<수집 항목>

- 필수항목 :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

<보유·이용기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문서보관 및 처리를 위해 3년간 보유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신청자께서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회장선거’ 입후보자 등록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표시). 예 아니오

본인은 회장선거 입후보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성 명 : (인)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 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모든 선거과정에서 정관.정관시행세칙 및 회장.부회장선출규칙을 준수하고, 선거운동 금지사항 위반 시에는 선거운동제한, 등록무효, 당선무효 등의 선거분과위원회의 처분결정에 순응할 것이며, 사무국의 선거중립 의무를 해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장 선거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여 당선자와 함께 힘을 합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인)

회 장 후보 : (인)

부회장 후보 : (인)

(인)

(인)

(인)

(인)

한 국 교 원 단 체 총 연 합 회

제 회 00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 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함에 있어,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 자격 관련 정관 제29조의 2 제1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선거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동안 교원노조의 노조원이 아니었음을 확인합니다.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 자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무효, 당선무효 등과 관련한 선거분과위원회의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인)

회 장 후보 : (인)

부회장 후보 : (인)

(인)

(인)

(인)

(인)

한 국 교 원 단 체 총 연 합 회

제 회 OO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 (마) 서식> (규칙 제12조 제3항 관련)

후보자 등록 위임장

대리인 소속 및 직위 :

대리인 성 명 :

본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 대 회장선거 후보 등록을 위한
모든 권리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회장후보 예정자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인)

한 국 교 원 단 체 총 연 합 회

제 회 00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 (바) 서식> (규칙 제12조 제3항 관련)

교 원 확 인 서

성명	
소속	지역 학교명
직위	

위 사람의 소속 및 직위, 정규직교원(교육공무원법 제31조 및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고등교육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학교장 (인)

한 국 교 원 단 체 총 연 합 회
제 회 00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 (사)의1서식>(규칙 제12조 제3항 관련)

범 죄 경 력 확 인 서

후보자 구분	회장 후보자 () / 부회장 후보자 ()
성 명	
소속 및 직위	
범죄경력 유무	있음 () / 없음 ()

■ 범죄경력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작성)

	죄 명	처분결과(형량)	처분일자
1			
2			

설명 및 소명	
---------	--

범죄경력에 관한 확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 작성방법

- 회장·부회장 후보자 개인별 작성 및 제출
- 위의 '범죄경력'은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수사기관의 수사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에도 작성
- 범죄경력이 없을 경우 '없음'에 표시하여 제출

한 국 교 원 단 체 총 연 합 회

제 회 OO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 (사)의2서식>(규칙 제12조 제3항 관련)

징 계 이 력 확 인 서

후보자 구분	회장 후보자 () / 부회장 후보자 ()
성 명	
소속 및 직위	
징계 및 불문경고 이력 유무	있음 () / 없음 ()

■ 징계 및 불문경고 이력 (*이력이 있을 경우 작성)

	처분결과	사유	처분일자
1			
2			

설명 및 소명	
---------	--

징계 및 불문경고 등 이력에 관한 확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 작성방법

- 회장·부회장 후보자 개인별 작성 및 제출
- ‘불문경고’, 징계 중 ‘견책’ 이상 모든 이력 사항 기재
· 사면, 말소된 이력도 기재 / · 징계절차가 진행중 또는 징계처분이 요구중인 경우도 포함
- 이력이 없을 경우 ‘없음’에 표시하여 제출
- 본 서류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한 국 교 원 단 체 총 연 합 회

제 회 OO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 (사)의3서식>(규칙 제12조 제3항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 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제출한 범죄경력확인서와 징계이력확인서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서약합니다. 제출 내용과 관련하여 선거분과위원회의 추가 소명 요청 시 충분한 소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범죄경력과 징계이력확인서의 내용이 회원들에게 공보로 안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범죄경력 및 징계이력확인서에 허위사실이 있다면 정관시행세칙 제44조 제2항에 의거, 선거분과위원회의 처분결정에 따를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 민감 개인정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선거분과위원회는 '회장선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후보 검증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범죄경력, 징계이력(불문경고 포함)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장선거 기간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신청자께서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회장선거' 입후보자 등록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표시). 예 아니오

본인은 회장선거 입후보 등록을 위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회장·부회장 후보자 개인별 작성

한 국 교 원 단 체 총 연 합 회

제 회 OO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규칙 제12조 제4항 관련)

등 록 접 수 증

1. 후보자 성 명 :

2. 소속 · 직위 :

위 사람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 대 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한 국 교 원 단 체 총 연 합 회
제 회 OO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장 (직인)

<별지 제9호 서식> (규칙 제14조 관련)

후보자 사퇴 신고서

1. 후보자 성명 :
2. 소속 · 직위 :
3. 사퇴사유 :

본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 대 회장 선거 입후보를 사퇴하고
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후보자 (인)

한 국 교 원 단 체 총 연 합 회
제 회 00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규칙 제27조 제1항 관련)

기호 추천 위임장

대리인 소속 및 직위 :

대리인 성 명 :

본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 대 회장선거 기호 추천을 위한
모든 권리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회장후보 예정자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인)

한 국 교 원 단 체 총 연 합 회

제 회 OO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규칙 제34조 제3항 관련)

투표 참관인 신고서

1. 후보자 성명 :

2. 참 관 인

구 분	성 명	소속직위	주 소 (전화번호)	비고

위와 같이 투표 참관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인)

한 국 교 원 단 체 총 연 합 회

제 회 OO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

투표물품 확인(전체)

- 박스 : ()개
- 파레트 : ()개
- 무표 선거우편물 : ()개 *0. 00.(금) 18시 이후 도착

한국교총 선거분과위원장 000	(인)
기호 1번 후보자 대리인	(인)
기호 2번 후보자 대리인	(인)
기호 3번 후보자 대리인	(인)

0000. 00. 00.

<별지 제12호 (나) 서식> 규칙 제37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관련)

투 표 용 지

연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 00 대 회장 선거 투표용지	
절취선		
기호	후 보 명	기표란
기호1	홍 길 동	
기호2	임 껍 정	
기호3	한 국 인	

년 월 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 00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위원장 (인)

투표물품 봉인 확인(개별)

한국교총 선거분과위원장 000	(인)
기호 1번 후보자 대리인	(인)
기호 2번 후보자 대리인	(인)
기호 3번 후보자 대리인	(인)

0000. 00. 00.

투 표 록

투표소명	제 투표소			
투표시간	개시시각	년 월 일 시 분		
	종료시각	년 월 일 시 분		
투표상황	선거인명부 등록자수 ①	투표자수 ②	기권자수(①-②)	
투표용지 수령·교부상황	수령매수 ①	교부매수 ②	잔여매수 (①-②)	비고
<p>이 투표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투표소 사무장 ①인 투표 참관인 ①인 투표 참관인 ①인</p> <p>한 국 교 원 단 체 총 연 합 회 제 회 〇〇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p>				

회송용 겹봉투

(앞 면)

주소 성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table border="1"><tr><td>서울○○우체국</td></tr><tr><td>발송유효기간</td></tr><tr><td>요금후납</td></tr></table>	서울○○우체국	발송유효기간	요금후납
서울○○우체국				
발송유효기간				
요금후납				
<p>제○○대 한국교총 회장선거 회송용 겹봉투</p> <p>회송용 겹봉투 속에는 반드시 '회송용 선거인명부'와 투표를 마친 '속봉투'를 넣어야 합니다.</p> <p>-----</p> <p>* 주의사항</p> <p>① 투표참가 선거인은 '회송용 선거인명부'에 반드시 서명하여야 함.(서명수보다 속봉투수가 많은 경우 전체 무효)</p> <p>②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속봉투에 넣고 봉합한 후 분회장에게 제출바람.</p> <p>③ 늦어도 월 일에는 회송하셔서 월 일 투표개표일전에 우편물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p>	<p>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14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 회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p> <p><input type="checkbox"/> 0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7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4</p>			

(뒷 면)

<p>제○○대 한국교총 회장선거 회송용 겹봉투</p>
--

<별지 제15호 서식> (규칙 제43조 제1항 관련)

회송용 속봉투

(앞 면)

<p style="text-align: center;">제〇〇대 한국교총 회장선거 속봉투</p> <p style="text-align: center;">-----</p> <p>선거인께서는 투표용지에 기표 하신 후 이 속봉투에 넣어 분회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속봉투를 제출하실 때 반드시 '회송용선거인명부'에 본인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p>
--

(뒷 면)

<p style="text-align: center;">제〇〇대 한국교총 회장선거 속봉투</p> <p>이 봉투에 주소, 성명, 인영 등 어떠한 표시를 할 경우, 그리고 봉합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무효처리가 됩니다.</p>

<별지 제16호 (가) 서식> (규칙 제44조 제3항 관련)

투표용지 반송 대장(가)

<분회별 반송>

연번	분회명	접수일	재발송여부	사유	위원회 확인

한 국 교 원 단 체 총 연 합 회
 제 회 OO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

<별지 제16호 (나) 서식> (규칙 제44조 제3항 관련)

투표용지 반송 대장(나)

<개인별 반송>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접수일	재발송여부	사유	위원회 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 회 00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

<별지 제17호 (가) 서식> (규칙 제46조 관련)

투표용지등의 발송록

구 분	내 용	
1. 발송작업 일시		
2. 발송작업 장소		
3. 발송작업에 종사한 관계자	선거분과 위원	
	참관인	
	투표용지 발송 및 접수 사무원 및 사무보조원	
4. 투표용지 발송 상황	총 선거인수	
	발송통수	
	미 발송자 수	
	비 고	

한 국 교 원 단 체 총 연 합 회
 제 회 OO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

<별지 제17호 (나) 서식> (규칙 제46조 관련)

투표용지등의 접수록

구 분	내 용	
1. 접수작업 일시		
2. 접수작업 장소		
3. 접수작업에 종사한 관계자	선거분과 위원	
	참관인	
	투표용지 발송 및 접수 사무원 및 사무보조원	
4. 투표용지 접수 상황	총 선거인수	
	접수통수	
	비고	

책임자 (인)
참관인 (인)

한 국 교 원 단 체 총 연 합 회
제 회 00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

<별지 제17호 (다) 서식> (규칙 제46조 관련)

투표용지등의 접수대장

순번	회송 대상		접수일	접수방법	위원회 확인
	회송 분회명	회송 개인 (성명, 소속, 직위)			

<별지 제18호 서식> (규칙 제47조 제6항 관련)

우편투표 마감 소인 이후 접수된 투표용지등의 접수 대장

연번	회송 대상		접수일	위원회 확인란
	회송 분회명	회송 개인 (성명,소속,직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 회 OO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

<별지 제19호 (가) 서식> (규칙 제55조 제3항, 제58조 관련)

개 표 록

구 분	내 용	비 고
총 선거인수		
투 표 인 수		
무 효 인 수		
기 권 인 수		
기호1번 000 득표수 기호2번 000 득표수 기호3번 000 득표수 기호4번 000 득표수 기호5번 000 득표수		
최다 득표자 기호0번 득표수		

※ 기 타 사 항

	선거분과위원장
확인란	

<별지 제19호 (나) 서식> (제58조, 제62조 관련)

기호○번 ○○○후 보 집 계 록

구 분	내 용	비 고
총 선거인수		
유효 투표인수		
득 표 수		

※ 기 타 사 항

확인란	선거분과위원장

개표 참관인 신고서

1. 후보자 성명 :

2. 참 관 인

구 분	성 명	소속직위	주 소 (전화번호)	비고

위와 같이 개표 참관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인)

한 국 교 원 단 체 총 연 합 회

제 회 OO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귀중

<별지 제21호 (가) 서식> (규칙 제61조 제1항 관련)

개 표 록(가)

()번 개표대

구 분	수량	비 고
유효 겹봉투수 (속봉투와 회송용선거인명부가 봉합되어 들어 있는 수)		겹봉투(박스) 작업 완료후 유효 겹 봉투 박스에 담긴 수량

※ 기 타 사 항

확인란	선거분과위원장

<별지 제21호 (가) 서식> (규칙 제61조 제1항 관련)

개 표 록(가의 2)

()번 개표대

구 분	수량	비 고
무효 겹봉투수 (속봉투나 회송용 선거인 명부가 들어 있지 아니하거나 선거인 명부상의 투표 서명인원 수보다 속봉투 수가 더 많은 수)		재검을 위해 ‘○번’ 개표대로 보낸 누적, 합산 수량
무효 겹봉투내 속봉투수		

※ 기 타 사 항

	선거분과위원장
확인란	

<별지 제21호 (나) 서식> (규칙 제61조 제2항 관련)

개 표 록(나)

()번 개표대

구 분	계	비 고
유효 속봉투수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수)		개봉한 속봉투를 50개 단위 고무 밴딩
기호 1번 ○○○ 후보		투표용지 100매 단위로 고무줄 묶음
기호 2번 ○○○ 후보		
기호 3번 ○○○ 후보		

※ 기 타 사 항

	선거분과위원장
확인란	

<별지 제21호 (나) 서식> (규칙 제61조 제2항 관련)

개 표 록(나의 2)

()번 개표대

구 분	계	비 고
(개봉) 무효 속봉투수 (투표용지가 들어 있지 않거나 기표하지 않았거나 선거인 개인을 식별했거나 어느 곳에 기표했는지 식별불가능한 수)		
(개봉) 무효 투표용지 (기표하지 않았거나 선거인 개인을 식별했거나 어느 곳에 기표했는지 식별불가능한 수)		
(미개봉) 무효 속봉투수 (속봉투가 봉합되지 않았거나 속봉투에 개인 식별 표시를 한 경우)		

※ 기 타 사 항

	선거분과위원장
확인란	

<별지 제21호 (다) 서식> (규칙 제62조 관련)

개 표 록(다)

구 분	내 용	비 고
총 선거인수		
투 표 인 수		
무 효 인 수		
기 권 인 수		
기호1번 000 득표수 기호2번 000 득표수 기호3번 000 득표수 기호4번 000 득표수 기호5번 000 득표수		
최다 득표자 기호0번 득표수		

※ 기 타 사 항

	선거분과위원장
확인란	

<별지 제22호 서식> (규칙 제67조 관련)

증 제 호

당 선 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 ○ ○

귀하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한 제 대 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선거의 (부)회장으로 당선이 결정되었으므로 당
선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제 회 OO대의원회 선과분과위원회

<별표 1> (규칙 제21조 제1항 관련)

선거운동 허용 및 금지 사항

구분	적용 방법		비고
	허용	금지	
선거사무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 선거사무소에 한하여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드벌룬 등을 이용한 방법 불가 ○ 유력인사 원본 사진 조작·수정하는 등의 방식 현수막 게재 불가 ○ 선거연락소 개설 불가 ○ 선거사무소 개소식 불가 ○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현수막 설치 불가 	
명함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함배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격 : 길이 9cm×너비 5cm(하트·원형 등 규격 안에서 제작 가능) -내용 :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 배부가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후보자(회장 및 부회장 후보) -입후보자의 배우자 -지지자 2인 ○ 학교방문 회원에 직접 배부 허용 ○ 온·오프라인 배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본사진이 아닌 합성사진 게재 불가 ○ 선거사무소비치, 문틈·차량에 꽂아 두기·우편함투입·호별방문 배부 불가 ○ 안경달이, 거울 등 다른 용도 제작 불가 ○ 학교방문 명함 배부 시 회원 전체 모임을 주선받거나, 회원들을 집단으로 모아서 정견을 발표하거나 인사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 ○ 배부가능자 외 배부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과 직접 만날 기회가 없으므로 학교 분회, 시도·시군구 행사, 교육유관기관 행사 방문 후 교총회원에 대해 직접 인사하고 홍보하는 활동은 가능 ○ 명함 내용 중 학·경력 위조 시 엄정 조치(등록무효, 당선무효 등)
홍보물 제작·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배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성명·사진·학력·경력·공약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우편투표의 경우 투표일전에 각 분회로 일괄 배송됨.

구분	적용 방법		비고
	허용	금지	
온라인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페, 블로그, 밴드 등 개설 후 선거운동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권자에게 유료 서비스 무료 제공 불가 ○ 특정 단어 입력하면 후보자의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플랫폼에 자동 접속되는 행위는 불가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교충이나 후보자에 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 불가 	
전자우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우편, 회원대상 후보별 2~3회 교충에서 일괄 발송 ○ 후보자 및 지지자가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의례적 범위안 인사에 대해 전자우편 발송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공지 - 어떻게 정보를 수집했는지 소명 가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에 반해 정보 전송 불가 ○ 불법으로 불특정 회원의 이메일주소를 수집해, 발송하는 행위 불가 ○ 공공 네트워크(교육청 메신저 등) 등을 이용하여 교원에게 쪽지, 이메일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기간내 과도한 전자우편 발송으로 회원들의 심한 불쾌감 유발 ○ 소명불가능한 정보 수집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높아서 법적 시비를 불러 올 수 있음.
문자 메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메시지, 회원대상 후보별로 교충에서 일괄 발송 ○ 후보자 및 지지자가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의례적 범위 안 인사에 대해 문자메시지 발송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공지 -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 공지 - 어떻게 정보를 수집했는지 소명 가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으로 불특정 회원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기간내 과도한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회원들의 심한 불쾌감 유발 ○ 소명불가능한 정보 수집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높아서 법적 시비를 불러 올 수 있음.
전화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수화자간 1:1 직접 통화 방식 가능 ○ 후보자 및 지지자가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의례적 범위안 인사에 대해 직접 통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자 동의 묻지 않고 자동 음성 정보에 연결하는 행위 불가 ○ 회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8시) 불가 	

구분	적용 방법		비고
	허용	금지	
인터넷 광고	○ 교총 선거분과위 주관하에 한국 교총 공식홈페이지·한교닷컴·선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홍보 (선거분과위원회에서 별도 공보 자료 요청해 검토한 후 게재 예정)	○ 개별적 광고 불가	○과도한 선거비용 발생 방지
여론조사		○ 여론조사 전면 불가	
언론 광고이용	○ 교총 선거분과위 주관 하에 한국 교육신문 2~3차례 일괄 공보 시행	○ 일간지, TV라디오 등 언론에 개별적 광고행위 불가	○과도한 선거비용 발생 방지
어깨띠 사용	○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나 표지물, 잇옷(5만원 이내) 착용 허용 - 입후보자를 포함하여 20명이내 착용 허용 - 표지물 규격 : 길이 100cm, 너비 100cm이내	○ 어깨띠나 표지물, 잇옷을 제외한 모든 물품 착용 불허	
현수막		○ 선거사무소 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 전면 불가 ○ 선거사무소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현수막 설치 불가	
방송연설	○ 교총 선거분과위 주관 하에 자체 후보자 동영상 촬영 후 한국교총 선거홈페이지 등에 게재 ○ 후보자합동연설회의 경우 선거분과위원회 결정에 따라 별도 실시 가능	○ 개별적 방송연설 등 불가	○ 회장 후보자만 별도 촬영(교총 선거예산으로 촬영. 사전 시간 및 촬영 횟수 등 정해서 공지)
기타사항	○ 정관시행세칙 제42조 제3항에 의거 허위사실이나 타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기재할 수 없음 ○ 이상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선거운동 허용·금지 유무는 선거분과위원회에서 판단토록 함.		

선거운동 제한사항

구분	제한 사항	비고
문자메시지 발송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총에서 회원들에게 직접 후보별로 보내는 공식 공보 문자메시지 발송 제한 ○ 후보자가 선거와 관련해 보내는 일체의 문자메시지 발송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메시지 발송 금지 통해 후보자의 선거 운동 제한 - 방식 또는 제한 횟수·기한은 선거분과위원회 결정
전자우편 발송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총에서 회원들에게 직접 후보별로 보내는 공식 공보 전자우편 발송 제한 ○ 후보자가 선거와 관련해 보내는 일체의 전자우편 발송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우편 발송 금지 통해 후보자의 선거 운동 제한 - 방식 또는 제한 횟수·기한은 선거분과위원회 결정
한국교육신문 후보자 공보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시행세칙 제42조에 의거 한국교육신문 또는 홈페이지 후보자 공식 공보(1차 공보)를 제외한, 여타 공보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회 정도 제공되는 한국교육신문 또는 홈페이지 후보자 공보 금지 통해 후보자의 선거 운동 제한 - 방식 또는 제한 횟수는 선거분과위원회 결정
개인별 홍보물 배포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개인별 홍보물의 배포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들에게 직접 배포하는 개인별 홍보물의 배포 금지 또는 제한을 통해 후보자의 선거 운동 제한 - 방식은 선거분과위원회 결정
후보자합동 연설회 참석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분과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합동연설회 참석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합동연설회 참석 제한 통해 후보자의 선거 운동 제한 - 방식은 선거분과위원회 결정
전화 홍보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를 통한 일체의 선거운동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통해 후보자의 선거 운동 제한 - 방식 또는 기한은 선거분과위원회 결정
후보자 동영상 홍보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분과위원회가 필요시 결정한 후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후보자별 동영상의 홍보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분과위원회 공식 지시·촬영 동영상 홍보물의 홍보 제한 통해 후보자의 선거 운동 제한 - 방식 또는 기한은 선거분과위원회 결정
명함배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후보자 배우자, 지지자 2인 등 명함 배포 가능자의 명함배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함 배부 금지 통해 후보자의 선거 운동 제한 - 방식 또는 기한은 선거분과위원회 결정
기타사항	이상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필요시 선거분과위원회가 회의를 통해서 제한사항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현직회장 재입후보시 제한 사항

- * 적용기간 : 선거공고일로부터 후보자 등록시까지
- * 적용제외사항 : 현직회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대상	내용	한시 적용·제한 내용	비고
회장 명의 각종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인사 대상 축·부의금 ○각종 조직행사에 대한 지원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공고일로부터 후보자 확정 공고일까지 ‘회장명의’가 아닌 ‘한국교총’ 명의로 지원 ○한국교총 명의라도 통상적·의례적 범위내에서만 가능 ○지원금 지원 범위 및 금액의 확대·변경이나 의례적·정기적이지 않은 행사에 대한 지원금 지원은 교총명의라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총 명의’만 가능 ○회장이 직접 전달하는 행위 금지
각종 행사 개최 또는 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례적·통상적으로 그 시기에 시행되던 행사는 그대로 진행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스승의 날 및 교육주간, 현장교육연구대회 시상식 등 ○기존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행사 개최 및 후원 허용 ○그 이외 교총의 목적사업(회세확장, 정책실현 등) 수행을 위해 긴급하게 반드시 개최할 필요가 있는 행사 제한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기자회견, 집회 등 * 허용 여부는 선거분과위원회에서 결정 ○의례적·통상적이지 않거나, 반드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개최할 필요가 없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긴급한 현안 없이 공청회, 심포지움,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례적·통상적 행사 개최 및 후원 가능 ○긴급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 개최는 하되, 회장 입후보자의 경우 모두 참석하거나 모두 불참하는 형식
교총 주최 행사에 교총 경비로 식사·기념품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에 식사 제공 ○정기적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에 통상적·의례적으로 해 왔던 기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한 한 식사제공 및 기념품 제공 피할 것(행사시간 조정 등 방법) ○불가피할 경우 통상적으로 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범위 고려 ‘1만원 이내 식사제공’ 및 의례적·통상적 제공범위 기

대상	내용	한시 적용·제한 내용	비고
	품	를 제공해 왔던 행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최고 1만원 이내)내에서 식사제공 및 기념품 제공 가능(단, 기념품 제공 명의는 한국교총명의)	기념품만 가능
각종 행사 참석 및 연설	○의례적·통상적 행사에 참석해 교총 회장으로서 인사하는 행위	○시도교총, 시군구교총, 분회, 직능조직 등 교총의 공식조직에서 개최하는 회의는 참석할 수 있음. 단, 의례적으로 해오던 인사말은 허용하되, 일체의 정견이나 선거운동과 연관된 발언은 불허 *교총 회장 자격으로 참가했을 경우 선거용 명함 배부 등 일체의 선거 운동 금지	○통상적·의례적 행사에 교총 회장 자격으로 참여했을 경우 인사말 허용하되 정견이나 선거운동 관련 발언 불가
지역조직·직능단체·유관단체 행사 참석해 식사 제공하는 행위	○분회, 시군구교총, 시도교총, 직능조직, 기타 유관단체 주최 행사에 참석해 식사 제공하는 행위	○식사 제공 및 경비 부담 행위 금지 *의례적·정기적 ‘교총 명의’ 지원금은 가능	○식사 제공 및 경비 부담 행위 금지
보도자료(동정 보도자료 포함)	○교총 보도자료에 현직회장의 실명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행위	○공식적인 선거 보도자료에 후보자 실명을 거론하고, 경력 등 필수사항을 알리는 경우는 가능(이 경우라도 선거분과위원장 확인요망) ○그 이외에 특정 후보자의 실명을 거명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도하는 행위는 금지	○공식 선거 보도자료 외 실명 거론·유추하는 보도자료 금지 ○기간명의 보도자료 배포 가능
각종 간행물을 통한 선전	○교총 간행 각종 유인물에 특정 후보자 거명하거나 유추할 수 있도록 게재해서 내보내는 행위	○현직 회장을 특정하지 않고, 자체사업계획에 들어있거나, 회세 확장·정책선도 등 교총의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할 목적으로 사업의 성과나 활동 등을 홍보하는 행위 허용 ○현직 회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불가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를 현직 회장의 치적으로 돌리는 행위 불가	○특정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업적을 홍보하거나,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를 특정 후보자의 치적으로 돌리는 간행물 발간 불가
한국교육신문 후보자 거명	○한국교육신문에 선거분과위원회가 승인한 선거공보 등을 제외하	○스승의 날 및 현장교육연구대회 시상식 관련 사진, 교육주간(스승	○스승의 날 등 통상적·의례적 행사

대상	내용	한시 적용·제한 내용	비고
	고, 특정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유추할 수 있도록 보도하는 행위	주간) 담화문 등 통상적·의례적 행사 중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만 기존 한국교육신문에서 매년 보도한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행위 가능 *그 이외 선거기간 동안 사진 게재나 실명거론 불가 *특정 후보자 명의 칼럼·시론 등 게재 불가	중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만 매년 보도한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행위 가능 ○그 외에는 후보자 실명 거론해 보도하는 행위 불가
일간지 등 언론 칼럼 및 인터뷰 등 게재	○언론에 칼럼 및 인터뷰 등 시행 및 보도	○현직 회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칼럼(정기 칼럼 포함)이나 인터뷰(TV 포함) 불가 *단, 일간지나 TV 등 언론매체가 선거보도를 위해서 후보자들을 인터뷰하거나 보도하는 경우에는 무방	○선거기간 동안 선거보도 목적 이외의 칼럼 및 인터뷰 출연 불가
언론사 토론회, 대담 등 참석	○언론사의 토론회, 대담 등 참석	○선거공고일로부터 후보자 확정 공고일까지 언론사의 토론회, 대담 등 참석 불가 *현직 회장을 대신할 수 있는 인사가 참석토록 함.	○선거운동 기간 중 교총 회장 자격으로 언론사 토론회, 대담 참석 불가
교총 차량 및 운전원 이용	○교총 회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시에는 이용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에 교총 차량 및 운전원 이용 불가	○교총 회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시는 이용 가능 ○그 외 선거운동 수행 목적 일체 사용 불가

후보자 공보 세부 사항

홍보사항	내용	횟수	공보 방식	비용부담
후보자 공보	□정관시행세칙 제42조 관련 후보자 공보	1회	선거·교총 홈페이지 또는 한국교육신문·한교닷컴	교총 부담 (단, 광고 제작시 광고 제작 관련 비용은 후보자 부담)
	□정식 후보자 공보 외 추가 할 사항 - 공약 위주 공보, 이미지 광고 등	1회~2회		
개인별 공보물	□후보자 학·경력, 공약, 자기소개 등 선거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개인별 공보물	1회	우편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투표시 공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을 수 있음)	□인쇄비 후보자 부담 □발송비 교총 부담
문 자 메 시 지	□후보자 개인별 공보 장문 문자메시지(LMS)	1회	휴대전화	□교총 부담
전자우편	□후보자 합동 및 개인별 공보 전자우편	통합2회	이메일	□교총 부담(디자인 교총 일괄 적용)
		개별1회		□교총부담(디자인은 규격에 맞춰서 후보자들이 각각 제작 후 제출)

선거사무종사자 업무 수칙

제 1 조(목적) 이 수칙은 선거사무종사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서, 한국교총 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적용) 이 수칙은 한국교총 회장·부회장 선출규칙 제5조에 규정한 선거사무를 대행하는 사무국 직원(이하 “선거사무종사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근무) ① 선거사무종사자의 업무는 한국교총 회장 선거 공고와 함께 시작되며, 선거 개표와 당선자 발표와 동시에 종료된다.

② 선거사무종사자의 공식 선거업무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되, 선거분과위원회 회의 등 상황에 따라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할 수 있다.

제 4 조(규정 준수) 선거사무종사자는 한국교총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회장·부회장 선출규칙, 선거사무종사자 업무 수칙 등을 준수하고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조(공정 업무) ① 선거사무종사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분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며,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 무사하게 응대하고, 동일한 절차와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② 선거사무종사자는 공식 업무시간내 공식적으로 정한 방법 등을 통하여 후보자 등의 선거 관련 문의에 응대하고 서류 등을 접수하며, 근무외 시간에 후보자 등과의 핸드폰 등 기타의 방법으로 응대 또는 사적 접촉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6 조(비밀 엄수) ① 선거사무종사자는 후보자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② 선거사무종사자는 선거 관련 제반 문서 보안에 책임이 있으며, 선거 종료시에 모든 관련 문서를 한국교총 사무국으로 인계해야 한다.

제 7 조(신고 의무) ① 선거사무종사자는 후보자 및 지지자의 선거운동 금지사항 위반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선거분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선거사무종사자는 후보자 및 지지자가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강요 등을 할 경우에는 즉시 선거분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